

개정된 소방법 시행규칙 및 시설기준

방재연구부 제공

소방법 시행규칙과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 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이 84년 8월 16일 개정 공포되었다. 아래는 그 주요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소방법 시행규칙(내무부령 제 418호)

소방법(1983. 12. 30. 법률3,675호) 및 동법 시행령(1984. 6. 30. 대통령령 제11,461호)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음.

1. 방염성능이 있는 물품의 종류로 종전의 방염선처리 물품 및 방염후처리물품에 난연성섬유등물품을 추가하여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이 상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방염처리를 한 것으로 정함(제 7 조).

2. 종전에는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방염 성능의 검사를 모두 소방서장이 하던 것을 그 검사에 전문적인 기술과 장비가 요구되는 방염선처리물품 및 난연성섬유등물품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소방용기계·기구의 점검대행자가 하도록 하고, 방염후처리물품에 대하여만 관할 소방서장이 방염성능검사를 하도록 함(제 9 조).

3. 방염성능검사의 방법을 일부 보완하고 그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제10조 제 3 항 및 제 4 항).

4. 등록제에서 면허제로 전환된 소방설비공사업의 종류를 방염처리업·공사업 제 1종(기계분야)·공사업 제 2종(전기분야)·정비업 제 1종(기계분야)·정비업 제 2종

(전기분야)으로 구분하고, 그 종류별 영업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제15조 및 별표 3).

5.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신청서 접수개시일 30일전까지 면허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에 1면이상 공고하도록 함(제16조).

6.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신청 및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제17조).

7.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0일이내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8조).

8. 소방설비공사업의 도급한도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방설비공사 실적의 신고는 전년도의 실적을 매년 2월15일까지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행하도록 정함(제19조).

9. 소방설비공사의 시공신고·절차를 정하는 한편, 그 시공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에 의하여 작성 또는 검사 확인된 시방서와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도록 함 (제20조 제 1 항 및 제 2 항).

10.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소방설비기술사의 설계에 의하여 시공신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경미한 소방설비의 시공관리의 경우에는 시공신고를 생략하도록 함(제20조 제 3 항 및 제 4 항).

11. 소방설비기사의 책임 하에 시공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소방설비의 시공관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제20조의 2).

12. 소방설비기사의 신고절차를 정함(제21조).

13. 소방법에서 새로이 규정된 청원소방원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제45조의 2 내지 제45조의 6).

14. 과태료부과기준 및 부과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제79조 및 제80조).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 제조 소등 시설의 기준에 관한 규칙(내무부령 제419호)

소방법 시행령의 개정(1984. 6. 30 대통령령제11, 461호)으로 새로이 소방시설로 규정된 상수도소화용수 설비·비상조명등 및 유도표식에 관한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스프링클러설비·배연설비 기타의 소방설비의 설치·유지 및 관리기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음.

1. 옥내소화전설비의 회로에 사용되는 전선을 한국공업규격(KS) 품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전선을 부설하는 방법으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합성수지관공사를 추가함(제 6 조 제 4 호).

2. 옥내소화전설비의 노즐 선단의 방수압력을 7kg/cm^2 의 상한치를 새로이 설정함(제 7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

3. 종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펌프의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 7 조 제 1 항 제 6 호).

4.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중 흡입배관의 구조·주배관 및 가지배관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옥내소화전설비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겨울철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에 대하여 동결방지조치를 하도록 보완함(제 8 조 제 3 항 내지 제 8 항).

5. 옥내소화전설비의 소화용급수배관에 설치되는 개폐밸브로 개폐표시형밸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점검을 쉽게하고 사용불능상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보완함(제 8 조 제 9 항).

6. 옥내소화전함의 표시로서 종전에는 적색등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반영구적인 발광식표지 또는 촉광식표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 9 조 제 3 항 제 1 호).

7.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의 양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설치된 헤드의 갯수에 일정 수량을 곱하여 일률적으로 정하여도록 하였으나 설치된 헤드의 갯수가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리역학적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함(제 13 조 제 2 호).

8. 스프링클러헤드의 선단의 방수압력의 상한을 12kg/cm^2 이하로 정하여 방수압력의 과다로 인한 물분무현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효과감소

를 방지하도록 함(제 15 조 제 1 항 제 2 호).

9.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일제개방밸브의 설치기준을 경제적부담을 적게하고도 최대의 소화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보완·조정함(제 16 조).

10.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의 설치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배관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고, 배관상의 침전물축적을 방지하는 한편 하나의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를 8개이하로 제한함(제 18 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

11.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시로 그 작동시험이 가능하도록 함(제 18 조 제 5 항).

12. 주차장에 포소화설비 대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겨울철에 스프링클러설비가 동파되지 아니하도록 함(제 18 조 제 8 항).

13.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드렌처설비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드렌처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 23 조 제 3 항).

14.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대한 충전비의 상한을 규정하여 저장용기의 약제저장량을 표준화함(제 47 조 제 2 항 제 1 호).

15. 할로겐화물 소화약제방출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의 내부용적이 1.5배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방호구역에 대한 할로겐화물 소화약제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하도록 함(제 59 조 제 6 항).

16. 옥외소화전설비의 관창을 방사형으로 하도록 함(제 75 조 제 4 항).

1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에 이미 보편화되고 있는 R형수신기를 추가함(제 83 조).

18. 현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장소중 감지기의 기능유지가 어려운 장소나 화재가 아닌 경우에도 경보가 울릴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장소로서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또는 고온 및 저온으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등을 추가함(86 조 제 4 항).

19.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반이 설치된 장소에 상시 통화가능한 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감시인이 상주하는 경

우에는 소방서와 연결된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95조 제 2 항).

20. 호텔의 경우에는 화재시 인명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피난사다리·피난용트램·피난교등의 피난기구외에 객실마다 반드시 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도록 함(제100조 제 2 항).

21. 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의 크기·표시·성능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제107조 제 3 항 및 제108조의 2).

22.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대지와 접하고 있는 도로 또는 공지경계선에 따라 140m마다(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매동마다) 1개이상을 설치하도록 하는등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제112조의 2).

23. 배연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 그 배연구역·배출방식·배출량·배출기·공기유입방식등의 기준을 전면 보완하였음(제114조 내지 제120조).

24. 공기조화설비가 배연설비시설기준에 적합하고 평상시의 공기조화기능이 화재시 자동적으로 즉시 배연기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기조화설비로서 배연설비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제121조 제 2 항).

2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수선·용도변경에 따라 소방시설의 배관·배선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144조 제 2 항).

26.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 당해 소방대상물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의 기능을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범위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물을 이 규칙에 의한 소방시설로 보고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제144조 제 3 항).

27. 소방설비가 날로 발달되고 복잡화하게 됨에 따라 그 시설기준을 모두 법령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기준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통상적으로 설비의 목적 및 기술상의 원리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적용상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제144조의 2). ※ 자료 : 내무부

◎

해외 신제품 소개

차량용 연무질 소화기

—美 ISS社—

주택이나 차량에서의 화재를 조기에 재빨리 진화할 수 있게 고안된 연무질 소화기.

美 인터내셔널 세이프티시스템社(International Safety System)가 선 보인 이 소화기는 가정 및 공장용으로 24-H형과 차량 화재용으로 12-C형이 있다.

